



제391회국회(정기회)
제7차 법제사법위원회

법률구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 명의의 소송행위 등 수행 허용〉

■ 이수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2159호)

2021.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철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4
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 명의의 소송행위 수행의 필요성	6

I. 제안경위

1. 발의자 : 이수진 의원 등 10인
2. 발의일 : 2021. 8. 23.
3. 회부일 : 2021. 8. 2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현행법은 법률구조법인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여타의 민간 법률구조법인과는 달리 「법률구조법」에 그 설립 근거와 소속 변호사에 관한 규정 및 임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 등을 두고 있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에 해당하여, 공공성을 갖추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소송을 일률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개인 명의로 대리인 또는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의뢰인 간의 신뢰관계가 약화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같은 대규모 사회적 참사가 발생하여 공

익적 차원에서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가 필요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수행의 주체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의뢰인과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단 명의로 사건 수임이 필수적이라 할 것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담당변호사를 변경할 경우, 기존 담당변호사의 사임 및 변경된 담당변호사의 선임에 위해 소송위임장을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므로 사건처리가 지연될 뿐만 아니라, 생계에 종사하는 의뢰인이 여러 차례 불필요한 내방을 해야 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됨.

또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소송수행이 가능하여 법인명의 소송위임장과 담당변호사지정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법무공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는 실정임.

이에 국민들로 하여금 도움이 필요한 때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소송위임 및 담당 변호사 변경 등의 소송구조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용 상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명의 대리행위 제한 예외 인정(안 제5조 단서)

- 1) 현행 「법률구조법」은 법률구조법인 명의의 대리행위를 제한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하도록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음.
- 2) 개정안은 법률구조법인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대리행위 제한의 예외를 두고자 함.

나. 공단명의 소송대리 근거 및 절차 명시(안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33조제2항)

- 1)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 2) 이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소송대리 등 업무를 담당할 소속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공단을 대표하여 법률구조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절차를 규정하며, 「변호사법」의 규정 중 그 성격상 공단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 내용

□ 현행법은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으로 하여금 법인명의로 법률구조업무와 관련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법인명의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은 법률구조업무와 관련하여 법인명의로 소송에 관한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代理行爲)를 할 수 없다. <u><단서 신설></u>	제5조(대리행위의 제한) ----- ----- ----- ----- ----- ----- 다만,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u><신설></u>	제22조(법률구조의 절차 등) ① 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21조제1호의 업무를 행한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공단이 행하는 법률구조의 요건, 절차 등은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3조(준용) (생략) <u><신 설></u>	② 공단은 제21조제1호의 업무 중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訴訟代理),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 업무(이하 “소송대리 등 업무”라고 한다)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이하 “담당변호사 등”이라고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담당변호사 등은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④ 공단이 소송대리 등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 등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공단이 ----- ----- -----. 제33조(준용)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변호사법」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부터 제37조까지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 법인 명의의 소송행위 수행의 필요성

□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한하여 법인의 명의로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이고 동 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를 받는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현행법 제8조는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에 대하여 법인명의로 법률구조 업무와 관련한 소송 행위, 행정처분의 청구, 그 밖의 법률사무에 관한 대리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 개인 명의로 소송을 대리할 수밖에 없어 공단 내 인사 이동, 공익법무관의 복무 만료 등을 이유로 담당 변호사가 변경될 때마다 법원에 소송 위임장 등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개정안은 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려는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음.

○ 참고로,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은 법인의 명의로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¹⁾ 개정안은 「정부법무공단법」²⁾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1) 「정부법무공단법」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설립 취지 및 기능 등을 고려할 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법인 명의로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는 정부법무공단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공공단체의 소송 및 법률 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으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설립 목적이 다름. 양 공단의 설립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들 기관의 사업 범위에도 차이가 있음.³⁾⁴⁾⁵⁾

2) 「정부법무공단법」

제18조(소송업무 절차 등) ①공단은 공단 명의로 제16조제1항제1호의 업무(이하 “소송업무”라 한다)를 행하며 그 업무를 담당할 공단 변호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담당변호사는 지정된 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공단을 대표한다.

③공단이 소송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문서에는 공단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변호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④그 밖에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절차는 공단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변호사법」 제23조, 제30조 내지 제33조,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 및 제35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공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정부법무공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부법무공단을 설립하여 국가 등의 소송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합법성을 확보하여 국민을 위한 법치행정의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사업)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행정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로부터 위임받은 국가소송(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행정소송(행정청을 참가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민사소송, 조정·중재·비송 사건 및 헌법재판사건의 수행
2. 국가등에 대한 법률자문·입법지원 및 계약체결지원
3. 국가등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용역
4. 공익상 그 수행이 필요하거나 공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5. 제1호 내지 제4호에 부대되는 사업

4) 「법률구조법」

- 둘째, 정부법무공단과 달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변호사 재직 비율이 15%에 불과하여 실무적으로 비변호사인 일반직 직원들이 상당수의 법률상담을 수행하고 있는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법인 명의로 소송행위 등을 할 경우 변호사대리 원칙⁶⁾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보임.⁷⁾
- 셋째, 현행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에 대한법률구조공단뿐만 아니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과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⁸⁾ 등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만 법인 명의로 소송행위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른 법률구조법인에 대해서도 법인 명의로 소송행위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제8조(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설립) 법률구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법률구조
 2. 법률구조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3. 준법정신을 드높이기 위한 계몽사업
 4. 그 밖에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5)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와 같은 의견임.
- 6) 「민사소송법」
-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 7) 대한변호사협회도 이와 같은 의견임.
- 8)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옹호에 필요한 법률구조 사업을 실시하는 공익법인으로서, 최근에는 가정 문제 또는 가정 폭력에 중점을 두고 법률구조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로,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명의로 소송 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공단의 사건 관리 효율성 제고 및 법률구조의 공공성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1